

2/4분기 이사회의 개최

지난 6월 25일 서울 협회 사무실에서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안건은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증제도>의 조기 도입 건 이었고 참가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다.

지난 6월호 소식지에 소개한 것처럼 이 제도의 조기 도입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현재 협회의 운영실태로 보아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이지만 앞으로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 생각하면,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꼭 시행해야 할 제도인 것이다.

사실 협회라는 것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이러한 제도들을 실행하는데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명실 공히 부산물비료의 전문직능단체로서 우리가 생산해 내는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품질보증을 함으로써 대외적인

신임도를 높이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 부산물비료 업계는 국가 규격인 공정 규격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 되어져 왔다.

이 공정 규격을 법에서 정한 공정규격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생산업체의 의견이 거의 무시되어져 왔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수분규제에 대한 것만 해도 그렇다.

대다수 생산업체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은데 그대로 실행 될 예정이다.

오히려 더욱 엄격해야 할 시설기준이나 원자재 사용기준에는 수수방관한 체 말이다.

판매 시장에 대해서도 그렇다.

'98년부터 시행된 정부 보조퇴비사업에 따라 그 시행 주체가 농협중앙회로 되다 보니 소비와 유통에 주체가 농협중앙회로 결

집되어 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전국 단위로 판매에 쉽게 참여 할 수 있다던가 판매물품에 대한 수금에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던가 하는 측면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생산 공정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생산규격에는 공정규격에 따라야 하고 판매는 농협의 입맛에 맞게만 움직이다 보니 업계 자체의 발전적인 방안은 완전히 도외시 된 것이 현재 우리 업계의 실정인 것이다.

앞으로 시행하려는 이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인식한 농림부에서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제도로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자율적이면서도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사업의 시행이 하기 힘들다 아니 다로 이야기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절대 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우선, 사업 시행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는 재정문제이다. 현재는 협회사무실도 제대로 꾸여 나가지 못하는 형편인데 또다시 재정마련을 해야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힘든 일이다.

이 문제는 어쩔수 없이 우선 전 회원이 공동부담으로 분담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금액은 회원사당 60만원씩 분담키로 결정하였다.

그렇게 하면 참여가능한 회원사를 60명으로 볼때 36,000,000원이되고 우선 이 자금을 가지고 우선 시행하기로 하였다.

납부 방법은 1차 7월 20일까지 300,000원을 2차 9월 30일까지 300,000을 보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전 회원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는 바이다.

다음은 통과된 추진계획안 전문이다.

부산물비료협회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인정업무 추진계획안

1. 배경

농림부는 유기질 비료 및 부산물 비료의 수요량 증가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업체가 해마다 늘어나 업체간 지나친 판매 경쟁으로 영세업체의 자체 비료 품질관리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 협회에 “단체 품질 인증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농협중앙회에서는 참여 업체 주천권을 “단체 품질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단체에만 허용할 방침이다.

유기비료 공업협동조합은 이번 2003년말 까지 도입하기로 하였고, 본 협회는 2005년까지 도입 완료할 것을 약속한바 있다.

2. “단체 품질 인증제도” 조기 도입 필요성

산업자원부의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시행되는 이 제도는 KS기준이 없는 품목일 경우 이에 대신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정부는 단체 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의 우선 구매 요구가 있을시, 이를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등의 조치로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최근 중앙정부 보조사업 외에 각 지자체 별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이 증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조금 지원 정책에 있어 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이 단체품질 인증제도를 먼저 실시하여 이러한 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면 상대적으로 본 협회 회원은 불이익을 당할 것이 확실하므로 반드시 이 제도를 조기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단체 품질 인증제도”의 인정 요건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요람

제40조(단체 표준우수인증단체의 인정요건)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는 단체중 규칙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단체표준인증 단체의 인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설비와 심사원을 확보할 것
 2. 제42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3월 이상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는 단체표준에 규정한 인증품목별 전 항목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1천만원 이상의 고가설비인 경우에는 전문 시험·검사기관의 설비 사용계약 또는 제품 시험·검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또한 지정심사기관과 시험·검사업무 협약체결로 제품시험전체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설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당해 단체가 직접 운용하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설비사용 계약 또는 시험·검사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전문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1. 국·공립 시험·검사기관
 2.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전문 시험·검사기관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중 시험·검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4.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정기관 및 공인 시험·검사기관
 5.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시험·검사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에 의한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는 단체중 규칙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표준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3월이상의 단체표준인증실적에 관한 서류
4. 2인이상의 단체표준 인증 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다만, 1인을 지정심사기관과 인증 업무협력 협약체결로 대체할 경우에는 업무협약 체결서
5. 단체표준제품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하 “시험설비”라 한다)의 보유현황 또는 임차사용 계약서. 다만, 지정심사기관과 시험·검사 업무협력 협약체결한 경우에는 업무 협력 협약 체결서
6. 단체표준제품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이하 “제품 검사원”이라 한다)의 현황에 관한 서류. 다만, 지정심사기관과 시험·검사 업무협력 협약체결할 경우에는 업무 협력 협약 체결서
7. 단체표준인증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부규정(이하 “단체 표준인증업무규정”이라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한 단체표준이 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우수인증 단체의 인정요건에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단체표준인증능력이 우수한 단체로 인정(이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라 한다)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단체표준우수인증 단체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가 그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신청서류 중 당초에 제출된 서류와 기재사항의 변경이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42조(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①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 업무 규정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검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단체표준인증 표시도표의 표시방법·도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의 사후관리절차, 기준미달사항에 대한 처분 기준에 관한 사항
6. 심사원의 운용계획 및 준수사항
7. 제품검사원의 운용계획 및 준수사항
8. 단체표준을 인증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제43조(단체표준인증심사) ①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체없이 2인이상의 인증심사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과 심사원의 명단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심사반에는 자체보유 인증심사원 1인과 지정심사기관소속 인증심사원 1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의 자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원의 자격에 이를 준용한다.

②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실시결과 단체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단체표준인증 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단체표준인증 공장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④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을 한 제품이 그 단체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수리·교환 또는 보상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 표시제품이 단체표준에 맞지 않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 생산공장에 대하여 특별사후관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준수사항 등) ①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인정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3장 보 칙

제46조(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 규칙 별표 9의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술사·품질관리기사·품질관리산업기사 자격취득자
2. 영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이수자

제47조(인증기관 등의 자체점검) ① 인증기관·지정심사기관 또는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장은 인증심사·정기심사 업무 또는 단체표준인증심사·사후관리업무가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증심사원 기준

인증 심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품질관리에 관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외국에서 동등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표준화 및 품질관리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 기술사, 품질관리 기사, 품질관리 산업기사 또는 인증심사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표준화 및 품질관리 관련 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산업공학 등 품질관리 관련분야 또는 인증심사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외국에서 동등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표준화 및 품질관리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 .
4. 영 재33조의 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 담당자 양성교육을 받은 자로서 표준화 및 품질관리 관련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

4. 소요 예상경비 총 60,000,000원

가. 시설 및 기계명

1. 프라즈마 발광분석기(I.P.C)구입금액 약 1억원(임대사용 년40만원)

분석항목: 비소, 카드뮴, 수은, 납, 크롬, 구리, 아연, 질소, 인산, 가리 등 중금속

2. 초자기류 및 기타 약 10,0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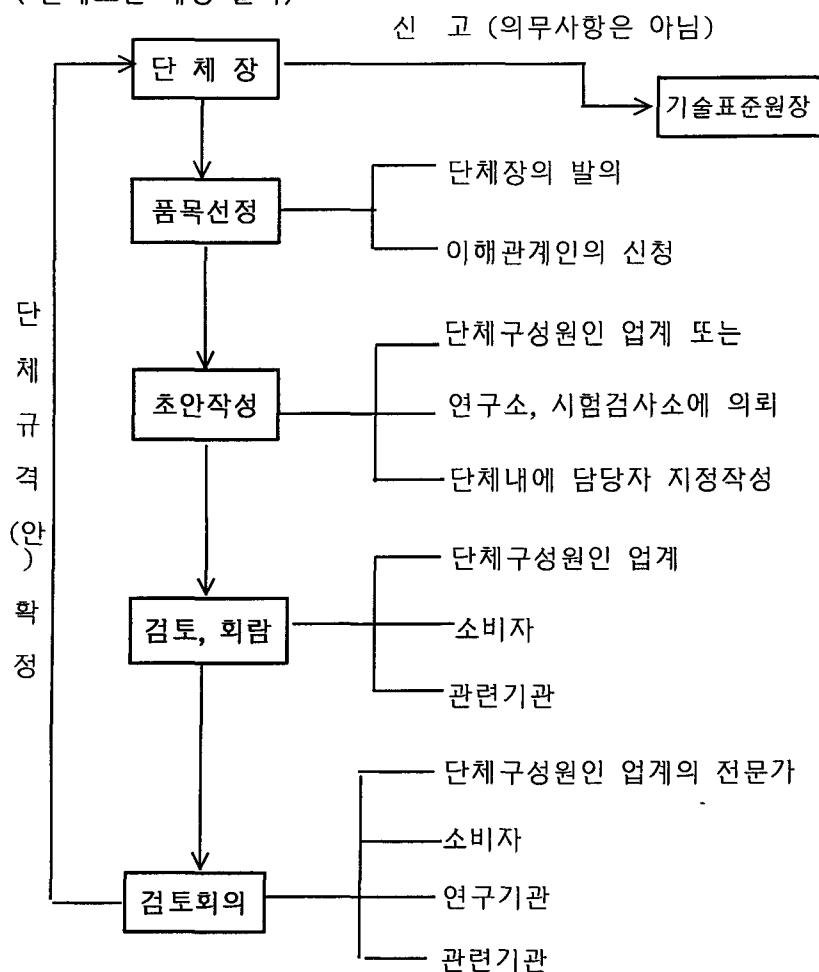
분석항목: 수분, 유기물, 유기물대 질소, 염분, 수분, 등

3. 실험실 : 사무실 증설분 5,000,000원

나. 단체표준 인증 심사원(2명)

년봉 25,000,000×2명 = 50,0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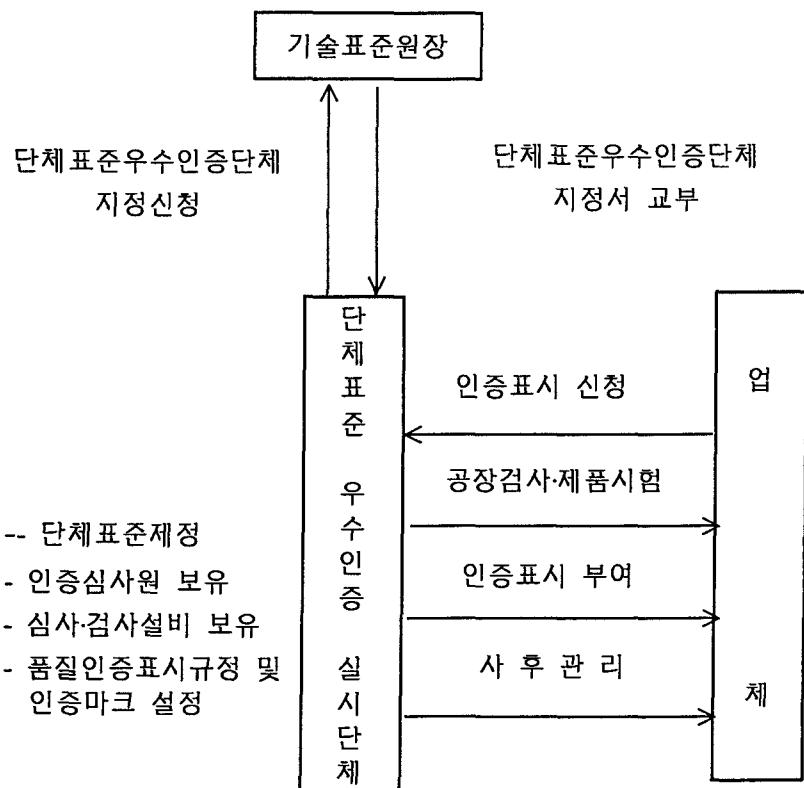
< 단체표준 제정 절차>



※ 단체표준의 제정 및 개정은 업종별 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제정·운용 할 수 있으나 단체별 중복 제정·운영방지를 위하여 기술표준원에 신고 토록 하고 있음.

〈 단체표준에 의한 품질인증 실시〉

가. 품질인증 절차



나. 우수인증 실시단체의 준수사항

- 시험·검사설비의 구비(위탁계약가능)
- 심사원확보(자격은 KS인증심사원 자격기준과 같음)
- 단체표준우수인증 표시 규정 제정 보유
- 매 5년마다 기술수준 검토하여 단체표준 확인·개정 등으로 조치
- 소비자보호 규정의 비치
- 우수인증표시 인증업체에 대한 년1회 사후관리

홈페이지 활용방법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일단락되었다.

인터넷 활용이 보편화 되면서 온라인상의 총보는 우리나라 유통시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업계의 실정으로 보면 실소비자가 농민인 관계로 업무상으로나, 연령대별로 보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하지만, 유기농업이나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는 인터넷 활용률이 점점 높아져 갈 것이며, 또한 사용원료의 특성상 환경문제가 겹쳐 있어 꼭 소비자가 아니더라도 비료 구매나 사용에 관계되는 여러 방면에 사람

들(관계공무원이나 농협직원 등)이 관심을 갖고, 우리 홈페이지로 방문 하리라고 본다.

이에 따라 아직 컴퓨터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처음 우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우측 상단에 협회 소개, 회원사, 자료실, 게시판, 관련사이트란 글자가 보인다.

1. 협회소개를 클릭하면,

- 회장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주요 사업안내
- 찾아오시는길
- 협회마크가 좌측으로 보인다.

해당단어에 클릭하면, 안에 내용을 볼 수 있다

2. 회원사를 클릭하면,

- 회원사 리스트

- 회원사등록 안내가
좌측으로 보이고, 바탕에는
각 도별표시가 되어 있다.

여기서 각 도별로 회원
사가 정리되어 있고, 각자
회원사가 로그인 해서 자기
회사 정보를 등록하려면 다
음과 같이 한다.

화면 우측상단에 HOME |
sitemap | contact | 회지보
기 | 가 있는데, HOME에다
화살표를 놓고 클릭한다.

그러면 홈페이지 첫화면
이 나온다.

사진이 있고 바로 밑에

ID :

Pass :

로그인

회원사 가입

이란 모양이 보인다.

우선 회원사 가입으로 들어
가 회원사 가입을 한다.(처음
은 협회사무실에서 회원사 기
본정보만 기록하기 위해서 ID
와 password는 이미 정해 놓
았으므로 협회로 문의)

회원사 ID와 Password를 입력
하고 로그인하면, 처음 회원사
를 접속했을 때와는 달리, 좌측
에 보면 회원사 공지 사항, 게
시판, 자료실, 연락처가 보인
다.

이곳은 회원사로 가입 로그인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page로, 우리 회원사들만이 활
용할 수 있는 코너이다.

다시 로그인 한 상태에서 바
로 옆을 보면 접속을 환영 합니
다 하고 옆에 로그아웃, 정보수
정란 글이 보인다.

정보수정란 단어를 더블클릭
하면 각자 회원사 별로 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수시로 사진도 바꾸고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교체하여 정보를
올리면 매번 새로운 페이지가
될 것이다.

3. 자료실로 들어가면,

- 생산 및 원부자재
- 통계자료실
- 관련법규
- 사진 자료실
- 각종 문서양식이 좌측으로 보인다.

해당단어를 클릭하면, 안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 자료실을 통하여 생산 및 유통과 기타 회사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실어 놓을 예정이니 많은 활용이 있길 바란다

4. 게시판에는,

- 자유게시판
- Q&A
- 공지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실린 공지사항은 처음 홈페이지 첫 화면에도 동시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5. 관련사이트는 앞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관련 사이트를 계속해서 추가할 계획이다.

회원사 소식

- 충남도지회장 장 덕용

이사님 부친 별세-

지난 6월26일 충남 도지회장으로 계신는 장덕용이사님이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삼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빙니다..

부산물비료 생산반 교육

국가전문행정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제1기 부산물 비료 생산반교육이 7월1일부터 7월3일까지 3일간 수원에 있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실시되었다.

우리협회에서는 소초축산영농조합, 의성서부영농조합, 서진바이오텍(주), 대림비료, 창성영농조합, 능

성영농조합, (유)수복농업회
사법인, 우리영농조합등 8개
업체가 참가하였다.

총 수료인원은 52명이었음

이 부산물비료 생산반 교육은 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아직 협회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못하는 형편에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회원사들의 흥보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 봄이 좋을 것 같다.

2004년도 교육 프로그램에는 좀더 알찬 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 기초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을 이수하신 업체는 물론 내년도 교육을 위해서 설문내용에 의견을 기재하여 7월 말일까지 협회로 보내주 기바란다.

2004년도 교육훈련 기초수요조사 실시 계획

1. 목적

2004년도 교육훈련계획 수립을 위한 본수요조사에 앞서 2004년도에 농업연수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이 명실공히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훈련 전반에 관한 각급 수요기관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고자 함

기초 수요조사 의견

1. 교육 환경 과정

가. 과정 신규 개설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내용	개설필요성 및 효과	비고
* 1주 합숙, 비합숙 등	2박3일	* 교과목 및 내용을 개조식으로 작성		* 교육장소, 특별한 교육방법 등

나. 기존 과정의 확대·축소·폐지

과정명	2003	2004	사유
	교육기간·회수·대상자	교육기간·회수·대상자	
		폐지과정의 경우 "폐지"로 기재	

다. 교육시기 변경

과정명	2003	2004	사유
*	월 단위로 기재(필요시 주 단위까지 기재)		

라. 교과목 변경

과정명	교과목		사유	비고
	신규	삭제		
	* ○○과목(○시간)	* ○○과목	-	

마. 교육방법 개선

과정명 (또는 교육내용)	현행	개선 (또는 새로운 방법)	사유

* 교육방법 : 강의식, 참여식(현장견학, 실현·실습, 토론, 사례발표), 합숙·비합숙

바. 촉천강사

강사명 소속·직급	성명	강의주제	연락처

2. 교육환경

가. 교육운영 관련사항

* 입·수료, 교재, 현장교육, 강사 등 교육운영 전반에 관하여 기재

나. 시설운영 관련사항

* 교육·합숙·편의시설 등 시설운영 개선 요망 사항

특별회원안내

우리협회는 비료생산업체를 갖고 참여한 정회원과, 정회원들과 관련된 업종을 갖고 참여한 특별회원이 있다.

각 분야별로 기존 회원사들에 되움이 될만한 업체를 선정하고 또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로는 포장재와 부자재를 취급하는 업체로 2개 특별회원사가 우리협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 특별회원사들이 생산하는 품목은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품목으로서 회원사들의 단체구매를 전제로 저렴한 금액으로 물품을 공급해 드리고 있다.

.또한 회원사들의 회비만 가지고는 협회운영이 불가능한 우리 실정을 생각하여 회원사들이 사용해준 물품대금에서 일정부분을 저희 협회 운영비에 도움이 되도록 찬조해 주고 있다.

협회 운영상태로 보아서는 전 회원사가 참여해 주신다면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있으시기 바라며 특별회원사를 다시한번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부농산업

퇴비제조시 부족한 미량요소 및 토양개량효과를 더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재로서 필라이트(phyllite)라는 신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사용용도로 보면 기존에 흔히 사용하던 제오라이트와 유사한 제품이라 할 수 있다.

제오라이트에 비해 다른점은 ①외관상 빛깔이 퇴비와 같은 짙은 갈색으로 품질검사에서 관능검사에 많이 의존하게되는데 이때 제품이 매우 고급스러워 보인다.

입자또한 매우 가늘어 부드러우며 촉감이 좋다.

②성분은 제오라이트와 같은 광물질이나 미량요소가 더 풍무하고 유기물도 함유되어 있어 부피 문제를 해결하려할 때 조금만 그 량이 많아져도 유기물대 질소의량에 신경이 쓰이던 것이 다소 해소 될 수 있다. 일명 천매암이라고 불려지는 이 불질은 내부에 미세한 공극을 많이 형성하고 있어 물리적 흡착력과 화학적 양이온치환작용 등이 아주 탁월하며 악취제거 능력도 좋다.

특히 이 회사의 대표인 흥재 구씨는 예전 용인축협조합장을 다년간 역임하여 퇴비비료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실무에 종 책임자인 상무이사 유한무씨는 용인축협 상무로 근무하면서 용인축협 공동퇴비제조장을 설립하여 수년간 퇴비제조장을 운영해온 경험이 있어 퇴비제조에 있어 지식이 풍부하다. 연락처

011-353-0504.

이룸산업

비닐포장재를 생산하는 업체이며 화학비료 포장재부터 주로 비료포장재만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이다.

비료를 적재하였을때 옆에서도 상표가 잘 보일수있도록 축면 인쇄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표면에 올록볼록한 엠보싱 처리를 하여 높이 쌓았을때 미끄럼방지에 탁월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금액에 대해서는 석유화학 제품이라 원자재의 가격이 등락폭이 심해 그때마다 적절히 협상하고 있으나 절대 타사 제품에 비해 비싸지 않다.

새 비료품종인 1급 그린퇴비를 신청하신 업체에서는 꼭 한번 연락하여 상담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포장재는 금액이 커서 회원사들이 적극 협조하면 협회운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

연락처

019-632-1950
대표이사 한 철수

비료성분 분석 의뢰

비료 성분분석을 의뢰할 때
성분 분석료를 선납한 회원사
는 협회사무실로 시료를 보내
고 있다.

시료를 보낼때 경우에 따라
서는 시료를 2점이상 한꺼번
에 검사의뢰 하는 경우가 있
는데 이때 대다수 우편으로
보내오면서 같이 포장을 하여
내용 시료가 1점인지 2점인지
모른는 상태에서 받아 보게
되고 그대로 분석기관으로 의
뢰하게 된다.

나중에 분석료 정산할 때
혼돈이 있을수 있으니 2점이
상의 시료를 같이 동봉할때는
포장지 곁면에 분석시료 점수
를 표기하면 좋겠다.